

- ★ 정보공개 심의 신청은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국가안보·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정보보호가 필요한 사업장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제6차 화학물질 통계조사표를 제출한 사업장 중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비공개를 원하는 정보가 있는 사업장은 아래내용을 참고하여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정보가 공개되나요?

-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①만 공개됩니다.
 - 통계조사표의 모든 화학물질이 공개되는 것이 아니며, 일반화학물질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① 유해화학물질, 유해인자, 중점관리물질, 독성가스, 위험물 (환경부고시 제2021-251호 참고)
- 제품은 이름(제품명)만 공개되며, 제품의 물질구성과 함유량(%)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제품명칭과 물질명칭이 연결되어 공개되지 않고, 별도 공개됩니다.
- 취급량은 정확한 양이 아닌 범주^②(01~10)로만 공개됩니다. 즉, 사업장에서 실제 보고한 취급량이 그대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② <취급량 공개 범주>

범주	중량(톤/년) 또는 부피단위(m ³ /년)	범주	중량(톤/년) 또는 부피단위(m ³ /년)
01	0.1 미만	06	5~20
02	0.1~0.5	07	20~200
03	0.5~1.0	08	200~1,000
04	1~2.5	09	1,000~5,000
05	2.5~5.0	10	5,000 이상

□ 심의 신청이 필요한 경우

- 위와 같이 기본 공개 범위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사업장에서 비공개를 원하고 철저히 비밀정보로 관리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갖추어 기본공개 심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각 사업장에서는 신청 전 “기본공개 미리보기”(심의신청 버튼 클릭 시 자동 생성)를 확인하시고, 정보보호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만 심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보호(심의) 신청 절차

- 대상 : 제6차('24년) 화학물질 통계조사표 제출 사업장 중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 을 보고한 사업장

※ 유의사항 : 정보공개 심의신청은 통계조사 제출 시기마다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전에 승인 받은 내용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해 제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에서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 반드시 기간 내에 심의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기간 :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출

- 방법 : 온라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사업장의 제출 및 관리의 편의성과 보안자료 관리 차원에서 온라인 제출을 적극 권장

1. 온라인 : [화관법 민원24\(https://icis.mcee.go.kr/cdms/\)](https://icis.mcee.go.kr/cdms/) 접속 > 로그인 > 조사·보고 > 정보공개 심의 > 기본공개 심의신청 클릭



2. 등기 : '제출서류' 를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

(단, 택배 제출은 불가함. 정보의 보안 관리가 인정되지 않음)

- 보내실 곳 : (우)28164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11로 270,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 정보공개심의 담당자 앞
- 제출서류(등기우편 제출시)
 - 1)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 2)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 목록(환경부고시 별지 제2호서식)
 - 3)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 요지·이유서(환경부고시 별제 제3호서식)
 - 4) 항목별 비공개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①비공지성 ②비밀관리성 ③ 경제성·유용성 등)
 - 5) 화학물질 공개대상정보(엑셀형식의 출력파일을 이동저장장치(USB)에 저장하여 제출)

- 유선문의 : 043-830-4238, 4243, 4242, 4241 (정보공개 심의 업무담당자)

- 전자우편문의 : chemdata@korea.kr

1. 접수기간 중 유선문의가 많을 예정이오니, 가급적 전자우편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전자우편으로 문의 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정보공개 심의신청 안내서’(화관법 민원24 > 정보마당> 자료실) 및 ‘화학물질안전원 유튜브 채널’의 교육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정보공개 심의신청은 “기본공개” 만 해당됩니다.

“기본공개 심의신청”은 법령에 따라 대국민공개되는 항목에 대해 조사대상 사업장이 사전에 비공개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개별공개 심의신청”은 청구인(제3자)이 기본공개 대상이 아닌 추가 정보를 별도로 청구했을 때만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개별공개 청구가 접수되면 대상 사업장에 개별 연락 및 관련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 개별공개 심의신청은 이번 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현재 신청 버튼 비활성화 되어있음